

「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및
재활용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6. 12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6. 20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2. 6. 21(목)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환경과장)

-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·유통·가공·조리·보관·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,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, 처리수수료 징수 등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신설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처리수수료 징수, 배출방법, 위반 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과
-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비롯해 자원화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기존 「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해 시행되던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1부